

#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

##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7일, 황명강 의원 외 23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8월 3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황명강 의원

나. 제안이유

○ 경북 여성의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리더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4호<sup>1)</sup>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역량강화를 통한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와 적극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리더의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 제2조는 경상북도에서 출생 또는 활동하거나 활동 중인 여성을 ‘여성리더’로 규정하여 조례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 안 제3조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여성리더 육성 시행계획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는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이는 여성가족부의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경상북도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가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6위)인 점을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하위권	59.7	15	84.7	10	70.0	16
2017	하위권	61.1	16	85.0	12	72.5	12
2018	하위권	63.4	16	84.6	12	74.5	8
2019	하위권	63.6	17	85.4	15	76.3	5
2020	하위권	64.2	16	86.9	10	76.4	3
2021	하위권	65.1	16	85.7	12	75.3	8
2020년 대비	동일	0.9	-	-1.2	-2	-1.1	-5
2016년 대비	동일	5.4	-1	1.0	-2	5.3	8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안 제6조는 ‘여성리더 자질 함양 교육’, ‘여성리더 인성 교육’,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 확대’,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및 구축’ 등을 여성리더 육성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기관과 단체의 활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7조는 여성리더의 정보공유, 교류확대와 교류를 위한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의 유희공간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리더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여성리더의 사회활동 참여의 폭을 신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는 안 제6조의 여성리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 있는 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9조는 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여성리더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7조<sup>2)</sup>의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붙임자료).

이는 여성리더 육성사업을 다른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과의 연계성을 통한 상호보완하고 위원회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여성리더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2)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 4-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종합의견

○ 여성가족부의 2023년 6월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2023~2027)’에 따른 경상북도의 ‘2023년 시행계획’을 보면, 총 63건, 113,76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중 직접적인 여성 여성리더 양성과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40%이상 유지(2021년 43.2%)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여성 고용보험가율 향상(남성 61%, 여성 39% / 2022.8월), 도와 시군의 5급이상 관리자의 여성 임용비율이 15.7%(418,14명 중 385명 / 2021년)에서 20%로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진출이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경북의 낮은 성평등지수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북의 여성리더(지도자)를 발굴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자료>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현 황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	구성일자 (설치구분)	2007. 4. 2 (조례)		
설치목적	○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장	성 명	김 학 홍	직 책	행정부지사	
위원 수	15명(당연 3, 위촉 12)		위촉내역	남 6, 여 6	임기 2년 (연임가능)
개최실적	2022년	1회	2023년	2회('23.8.24기준)	

□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위촉일
위원장	김학홍	남	道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	심영재	남	道 기획조정실장	"
"	최은정	남	道 여성아동정책관	"
"	하금숙	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3.4.16. ~'25.4.15
"	장승옥	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이진숙	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권영희	여	첨단벤처협의회 이사	"
"	김만호	여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
"	권은주	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김달호	남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	백정숙	여	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경북본부장	"
"	조득환	남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정책센터장)	"
"	김동섭	남	국립청소년해양센터원장	"
"	이승철	남	대구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	"
"	마웅렬	남	의성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	"